

## 면접대상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제출 시기	제출서류	제출부수	비고
면접전형 (해당자)	장애인 증명서류	1부 (원본)	장애인
	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	1부 (원본)	취업지원대상자
최종합격 후 (최종합격자)	기본증명서(상세)	1부 (원본)	-
	주민등록초본	1부 (원본)	병역사항 기재 필수
	신체검사서	1부 (원본)	신체검사 불참자에 한함
	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	1부 (원본)	-
<p>1) 제출서류는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 여부 확인 예정이며,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</p> <p>2) 장애인 증명서류는 정부24(<a href="http://www.gov.kr">http://www.gov.kr</a>)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. 단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(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)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정부24(<a href="http://www.gov.kr">http://www.gov.kr</a>)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 제출</p> <p>3)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정부24(<a href="http://www.gov.kr">http://www.gov.kr</a>)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만 인정</p> <p>4) 예비소집일에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진행 예정이나, 불참자에 한해 [붙임 9] 서식의 신체검사서 제출이 요구됨. 단 해당 서식의 신체검사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</p>			